

2021년 임시총회

- ▶ 일시 : 2021. 11. 12(금) 10:00
- ▶ 장소 : 롯데호텔3층 사파이어볼룸

한국수입협회 (KOIMA)

◆ 회 순 ◆

- . 성 원 보 고
 - . 개 회
 - . 국 민 의 례
 - . 의 장 인 사
 - . 전 회 의 록 보 고
 - . 의 안 채 택 및 심 의
- 제1호 의결사항 정 관 개 정(안)
- . 폐 회

전 회의록 보고

회의명칭	제 51회 정기총회
개최일시	2021. 2. 25(목) 14:00
개최장소	COEX E홀 E5 컨퍼런스룸 및 온라인 화상회의 동시진행
회 의 사 항	
<p><input type="checkbox"/> 성원보고: 재적회원 1,662인 중 출석 117인, 위임 171인(불참 1,374인), 계 288인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박철홍 실장이 보고함</p> <p><input type="checkbox"/> 개회선언: 홍광희 회장이 개회선언 후 회장인사를 함</p> <p><input type="checkbox"/> 전 회의록 보고: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제50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박철홍 실장이 보고한 후 김병모 회원은 직전 회원의 동의가 없는 전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은 것과 홍광희 회장이 당선 당시의 회의록이 첨부되지 않음을 피력, 이에 홍광희 의장은 직전 정기총회는 부득이 코로나19상태로 대통령 범정부 대책회의 특별담화로 정기총회를 비대면 으로 개최하였고 이에 동의 이외에 질의 및 의견사항이 없어 간략하게 전 회의록을 첨부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직전 회의록만을 첨부한다고 답변함, 정성태 회원은 작년 비대면 정기총회 관련하여 의안 및 질의사항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으며, 회원사로부터 별다른 회신이 없어 직전 정기총회가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순서에 의해 총회를 속회할 것을 요청함, 정명선 회원은 현재 비상사태상황에서 전년도 총회는 유례없이 비대면 으로 실시함 으로서 절차상 약간의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이해하고 앞으로 다뤄질 중대한 안전을 위해 총회를 속회할 것을 요청함, 이에 홍광희 의장은 전 회의록의 내용을 요청하는 회원사에게 추후 안내 해드리기로 하고 전 회의록에 대해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얻자 김병모 회원은 비대면이 아닌</p>	

서면으로 결의를 거쳐 정확한 근거를 남겨 둘 것을 요청한 후 회원사의 박수로 전 회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 **의안 채택 및 심의:**홍광희 의장은 아래에 기재된 제1호 의결사항 및 제1호 내지 제2호 보고사항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1호 내지 제2호 보고사항을 먼저 채택하기로 문자 출석회원 전원의 찬성에 따라 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함

〈보고사항〉

1. 제1호 보고사항 : 2020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보고

박인대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홍광희 의장은 이의 유무를 물은 바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감사보고서를 접수함

박성수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에 들어감

양준호 회원은 협회 각종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활동이 전혀 없는 분과위원회가 꼭 존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이에 홍광희 의장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존폐여부는 현 집행부에서 검토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차기 집행부에서 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할 계획임을 답변함

최선희 회원은 형식상으로 되어있는 위원회의 존폐여부를 차기 집행부로 이월해도 같은 결과를 도래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현시점에서 회원사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하기를 요청함

이에 홍광희 의장은 집행부 출범 초기 각 위원회 임원 인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에 한계점이 있어 보이기에 차기 집행부 인선 당시 조직개편을 통해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함

김병모 회원은 전기에 비해 당기 적자폭이 늘어난 점에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에 홍광희 의장은 작년 예산 편성시 50주년 창립을 맞아 일부 기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진 않은 점과 용산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수익의 감소 및 용산회관 임차인들의 임차료가 매해 채권으로 이월되는 점을 매해 대손상각으로 대체하여 적자폭이 늘어났으며, 협회 재정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수협으로부터 7억을 차입해 집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편성되어 있어 적자폭이 늘어났음을 설명함

이상과 같이 질의응답을 마치고 홍광희 의장은 김병국 회원의 동의와 김병모 회원의 재청에 이어 이의유무를 물은 바 이의가 없어 **제1호 보고사항 “2020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함

2. 제2호 보고사항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보고

박성수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에 들어감

김병모 회원은 2021년도 정부지원금의 증가 및 방위사업의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함

이에 홍광희 의장은 2019년도부터 시작된 태평양 도서국 사업을 협회가 외교부의 역할을 대행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아 예산이 늘어났으며, 방위산업체의 구매형태나 환경이 협회에게 어렵게 바뀌므로 사업영역이 많이 줄어들어 계약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수익이 감소되었으며 새로이 특수사업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함

이상과 같이 질의응답을 마치고 홍광희 의장은 전성군 회원의 동의와 정명선 회원의 재청에 이어 이의유무를 물은 바 이의가 없어 **제2호 보고사항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함

〈의결사항〉

1. 제1호 의결사항 : 정관 개정(안)

김형진 규정관리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최승웅 증경회장단 의장으로부터 제1호 의결사항 정관 개정(안)에 대한 소견 발표가 이어짐

최승웅 증경회장단 의장은 정관 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실현 가능성과 정관 및 규정의 자구선택에 미흡한 점이 있기에 협회 규정관리위원회 중심으로 법률 자문과 증경회장단의 자문을 통해 임시총회에 재상정 해주기를 건의함

이에 홍광희 의장은 오래된 정관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정비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취지와는 달리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다수 증경회장님들 및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여 임시총회에 다시 상정할 것을 출석회원님들의 동의를 얻음

박기수 회원은 협회 회원사들의 주권을 고려하여 좋은 수정안을 상정해 줄 것을 당부함

정명선 회원은 임시총회 시에는 비대면 방식이 아닌 코로나19의 완화상황을 고려하여 대면형식으로 개최되기를 요청함

최해창 회원은 추대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협회의 조직력 및 친목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므로 협회 사정에 맞는 적절한 개정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할 때 추대위원회 구성을 재고 해줄 것을 요청함

최선희 회원은 정관개정보다 회원사가 필요로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상정해 줄 것을 당부함

전성군 회원은 협회의 주인은 회원사이므로 회원사가 배제되어 있는 추대
위원회 개정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함

정명선 회원은 회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임시총회에 재상정 해줄 것을 요청함

성낙청 회원은 소수 인원의 의견으로 협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현상은 적절
하지 않으며 회장후보들의 입후보 등록금이 협회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직선제를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함

이상과 같이 질의응답을 마치고 홍광희 의장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1호 의결사항 “정관 개정(안)”은 임시총회에서 수정 보완하여 재상정
하기로 선포함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고 16:30경 홍광희 의장은 김병모 회장의 폐회 동의와
조기영 회원의 재청에 이어 이의유무를 물은 바 이의가 없어 한국수입협회
제51회 정기총회의 폐회를 선포함. 끝.

작성자 : 백승민 차장 (서명)

확인자 : 홍광희 회장 (서명)

출석 이사 : 김진식 (서명)

출석 이사 : 최영 (서명)

[사]한국수입협회 임시총회

의안번호	제 1 호
의결연월일	2021. 11. 12

의결사항

정 관 개 정 (안)

한국수입협회 (KOIMA)

1. 의결 주문

정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할 것을 심의·의결한다.

2. 의안 상정 근거 규정

정관 제25조(총회 의결 및 보고사항) ①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제정 및 변경 의결

3. 제안 경과

- 2021. 7. 2. 규정관리위원회 심의
- 2021. 7. 12. 회장단회의 심의
- 2021. 8. 5. 제183회 이사회 심의
- 2021.10. 28. 제184회 이사회 심의(서면결의)

4. 제안 사유

-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수입 대표 기관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관 현대화 작업
- 현 정관의 미흡한 부분 보완

붙임 : 신·구 주문 대비표

□ 붙임 : 신 · 구 조문 대비표(정관)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4조(공고) 본 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통신 포함) 및 협회지,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할 시에는 협회 홈페이지에만 게재할 수도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4조(공고) ①협회의 공고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간신문(인터넷 신문 포함)에 게재하거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2></p> <p>②협회 정관, 규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서면'은 '전자문서'를, '온라인'은 '모바일'을 포함한다. <신설 2021. 11. 12></p>	<p>서면→전자문서, 온라인→모바일 포함 명문화</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사 업</p> <p>제5조(사업) ①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 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계의 자율성 제고 및 거래질서 향상 2.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3. 업계발전을 위한 대정부건의 및 정책협조 4. 국제교류의 촉진과 유대강화 5. 해외시장의 다변화 및 확대 6. 국내외시장 조사 및 동향분석 <개정 2005. 2. 28> 7. 국내외 시장정보의 수집, 배포 및 시장활동 지원 8. 회원과 회원사 임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9.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개정 2005. 2. 28> 10. 회원을 위한 상담 및 자문 <개정 2005. 2. 28>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사 업</p> <p>제5조(사업) 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 11.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회원사의 비즈니스 지원사업</u> 2. <u>국내의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통상협력</u> 3. <u>국제교류의 촉진과 유대강화</u> 4. <u>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u> 5. <u>해외시장의 다변화 및 확대</u> 6. <u>통상 관련 연구 및 국내외 시장조사</u> 7. <u>상담 및 자문</u> 8. <u>연수교육</u> 9. <u>대정부건의 및 정책 협조</u> 10. <u>회원 상호간의 분쟁조정 및 친목</u> 	<p>사업내용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11. 회원 상호간의 친선, 친목 <개정 2005.2.28> 12. 협회와 회원을 위한 홍보출판사업 <개정 2005.2.28> 13. 국가기관, 공기업과 관련된 무역사업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촉받은 업무 <개정 2012.2.29> 14. 업무용 이외의 잔여부동산의 임대 <개정 2005.2.28> 15. 전각호의 부대사업 16.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p> <p>②제1항의 개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8></p>	<p>11. 홍보출판사업 12. 국가기관, 공기업과 연관된 사업 및 위촉받은 사업 13. 부동산의 임대 14. 빅데이터, 플랫폼, 인증 15. 전각호의 부대사업 16. 기타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p> <p><u>②전각호 중 일부를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 협회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u> <u><신설 2021.11.12></u></p> <p>③ <현행 ②와 같음></p>	<p>수익사업 명문화</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회 원</p> <p>제6조(회원) ①본 협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p> <p>1. 정회원 : 아래의 가목에 정한 가입정회원 및 아래의 나목에 정한 당연정회원이 본 협회의 정회원이다. <신설 2008.2.28></p> <p>가. 가입정회원 : 수입업 또는 무역관련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본 협회의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신청을 하고 소정의 회비를 선납한 자 <개정 2009.2.24></p> <p>나. 당연정회원 : 본 협회의 회장이었던 자연인으로서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사퇴할 의사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08.2.28></p> <p>2. 일반회원 : 본 협회의 사업추진에 찬성하는 자로서 회원의 자격을 가졌던 자 또는 단체 <신설 2008.2.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회 원</p> <p>제6조(회원) ①본 협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p> <p>1. 정회원 : 아래의 가목에 정한 가입정회원 및 아래의 나목에 정한 당연정회원이 본 협회의 정회원이다. <현행과 같음></p> <p><u>가. 가입정회원 : 수입업 또는 무역관련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본 협회 목적에 찬성하여 본 협회의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신청을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개정 2021.11.12></u></p> <p>나. <현행과 같음></p> <p>2. 일반회원 : 본 협회 가입정회원 자격자 중 직전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개정 2021.11.12></p>	<p>자구 수정</p> <p>회비미납시 일반회원으로 전환</p>

현행	개정(안)	비고
<p>3. 명예회원 : 본 협회의 사업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무역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많은 저명인사 또는 주한외교단, 주한의 국기관 <개정 2008·2·28></p> <p>4. 사이버회원 : 본 협회의 사업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사이버 상에서 협회의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회사 <개정 2008·2·28></p> <p>5. 개인회원 : 본 협회의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연인으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회원을 제외한 자 <신설 2018·2·26></p> <p>② 회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8></p> <p>제10조(회비) ① 본 협회의 가입정회원 및 개인회원은 협회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규정의 정하는 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6></p> <p>② 당연정회원·일반회원·명예회원·사이버회원은 회비납부의 무가 없다. <개정 2008·2·28></p> <p>③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03·2·27></p> <p>제11조(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탈퇴한 회원이 협회에 대한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5·2·28></p>	<p>3. 명예회원 : 본 협회의 사업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무역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많은 저명인사, 교수, 대기업 임원 경력자, 고위직 공무원 경력자 또는 국내외 외교단, 국내외 기관, 해외 동포상공인 <개정 2021·11·12></p> <p>4. 사이버회원 : 본 협회의 사업취지에 찬성하는 자로서 사이버 상에서 협회의 <u>일부 정보를</u> 이용하는 개인 또는 회사 <개정 2021·11·12></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회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본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u>특별회비의 기준은 특별회비운영요령 제3조에 따른다.</u> <개정 2021·11·12></p> <p>제11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에 기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u> <신설 2021·11·12></p>	<p>명예회원 범위 확대</p> <p>특별회비 납부자 세액공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p> <p>회원 탈퇴 및 제명시 회비 반환 금지</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2조(징계 및 자격상실) ①가입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08·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연도 연회비를 당해연도 연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2·27>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08·2·28> <p>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한다. <개정 2005·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법행위로 신용을 실추케 하였을 때 2. 본 협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정관, 규정 또는 결의사항에 위반하여 본 협회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5·2·28> 	<p>제12조(징계 및 자격상실) ①가입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08·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현행과 같음> <p>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한다. <개정 2005·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현행과 같음>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p>제13조(회원관리및윤리위원회) <개정 2008·2·28> ①회원의 권익과 복리증진, 관리 및 지원, 회원의 건전한 기업활동기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관리및윤리위원회를 둔다. 회원관리및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처리를 회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08·2·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 서비스 개발·지원 및 관리 <신설 2008·2·28> 2. 회원고충처리 <신설 2008·2·28> 3.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처리의견 <개정 2005·2·28> 4. 회원 상호간의 질서유지 5. 건전한 상도이에 대한 위배여부 <p>②회원관리및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8></p>	<p>제13조(회원관리및윤리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회원정보는 외부 유출을 금한다. <신설 2021·11·12></p> <p>③ <현행 ②와 같음></p>	<p>회원정보 유출 금지</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임 원</p> <p>제14조(임원)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05·2·28> 회 장 : 1인 부 회 장 : 11인 이내(상근부회장 포함) <개정 2008·2·28> 이 사 : 11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포함) <개정 2008·2·28> 상근임원 : 상근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 감 사 : 2인</p> <p>제15조(임원선임) ①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 선거인단에서 선임하며, 회장단독후보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4·2·27> 단, 선임된 임원이 임기중 사임하거나 유고시 또는 법원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확정판결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회장이나 자문단회(회장의 추천 불가능시)의 추천을 거쳐 6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2·27> ②선거인단은 정회원 70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현직임원등에서 300인 이내, 전·현직임원등이 아닌 정회원 중에서 40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2·27> ③상근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7> ④선거인단 구성 등 임원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임 원</p> <p>제14조(임원)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21·11·12>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7인 이상 15인 이내 <개정 2021·11·12> 3. 상근부회장 : 1인 이내 <개정 2021·11·12> 4. 이 사 : 11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 포함) 5. 감 사 : 2인</p> <p>제15조(임원선임) ①회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임한다. <개정 2021·11·12> ②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가입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외연확장을 위해 2인 이내의 부회장을 외부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③상근부회장의 선임 여부는 회장이 결정하며, 선임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21·11·12> ④선임된 회장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유고시 또는 법원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확정판결시에는 처음 도래하는 2월 21일 전까지 정관과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임 회장을 선임하며, 신임 회장 임기는 당해년도 3월 1일에 개시한다. 신임 회장 임기 개시 전까지 회장대행은 부회장(상근부회장 제외)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는 협회 가입이 오래된 순으로 맡는다. <개정 2021·11·12> ⑤제4항에 따라 신임회장이 선임되면 신임회장 임기 시작 전에 모든 임원들은 제18조에서 정한 임기와 무관하게 임기가 종료된다. <신설 2021·11·12> ⑥회장의 임원은 보궐시 회장이 선임한다. <개정 2021·11·12> ⑦임원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2></p>	<p>전무이사, 상무이사 폐지하고 직책으로 운영(대법원이 본 협회 사무국 임원을 직원으로 판결)</p> <p>회장선임 직선제로 변경</p> <p>외연확장 위해 부회장 외부에서 영입 가능</p> <p>회장 부재 상황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9-2-27>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5-2-28> 4. 상근임원의 경우 협회를 상대로 송사 등 법적 다툼에서 패소한 자 <신설 2018 · 2 · 26> <p>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p> <p>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5·2·27></p> <p>③상근부회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사무국을 관장하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89 · 2 · 22, 2012 · 2 · 29></p> <p>④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 소관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5 · 2 · 28></p> <p>⑤상근이사는 상근부회장 또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그 명에 따라 협회 운영업무를 관리 집행한다. <신설 1989 · 2 · 22></p> <p>⑥감사는 수지결산 및 재산의 변동상황과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5 · 2 · 28></p>	<p>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현행과 같음> 4. <u>본 협회를 상대로 송사 등 법적 다툼에서 패소한 자 <개정 2021 · 11 · 12></u> <p>제1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u>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임원의 의원 면직은 회장이 승인한다.</u> <개정 2021 · 11 · 12></p> <p>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u>제15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u> <개정 2021 · 11 · 12></p> <p>③상근부회장은 <u>회장의 명에 따라 사무국을 관장하며, 본 협회 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u> <개정 2021 · 11 · 1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현행과 같음> ⑤ <u><삭제 2021 · 11 · 12></u> ⑥ <현행과 같음> 	<p>자구 수정</p> <p>회장의 회의 의장 명시, 임원 사표 수리 추가</p> <p>상근부회장 겸직과 영리활동 금지</p> <p>상근이사 직급 폐지</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8조(임원의 임기)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로 한다.</p> <p>1. 본 협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임원선임년도의 3월 1일부터 차기 임원선임년도의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상근임원의 임기는 이사회 승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5·2·28> 단, 제15조(임원선임) 단서조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사임 또는 상실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서개정 2014·2·17></p> <p>2.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 및 이사는 연임할 수 있지만 매 기 2분의 1 이상을 신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상근임원은 제외) <개정 2009·2·24> 단, 제1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선임된 임원은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신설 2009·2·24></p> <p>3. 임기도중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4. 임원이 소속된 업체에서 사임하였을 때에는 본 협회의 임원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개정 2005·2·28></p> <p>제19조(임원의 보수) ①상근임원은 유급으로 한다.</p> <p>②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8조(임원의 임기)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로 한다.</p> <p>1. 본 협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임원선임년도의 3월 1일부터 차기 임원선임년도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1·12> 단, 제15조(임원선임) 제6항에 의하여 선임된 <u>회장의</u> 임원의 임기는 사임 또는 상실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서개정 2021·11·12></p> <p>2. 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 및 이사는 연임할 수 있지만 매 기 2분의 1 이상을 신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상근임원은 제외) 단, 제1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선임된 임원은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신설 2009·2·24> <단서삭제 2021·11·12></p> <p>3. <삭제 2021·11·12></p> <p>4. 임원이 소속된 업체에서 <u>대표자격이 상실되는 때에는 본 협회의 임원자격도 자동 상실된다. 단, 외연확장을 위해 선임된 임원은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u> <개정 2021·11·12></p> <p>제19조(임원의 보수) ①상근부회장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1·11·12></p> <p>②비상근임원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하며,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p>	<p>상근임원 임기 삭제</p> <p>전 조항 중복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회 의</p> <p>제21조(회의) ①본 협회의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두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2-28></p> <p>②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p> <p>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2-28></p> <p>제22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p> <p>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내에 개최한다.</p> <p>③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명으로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때 <개정 2008-2-28> <p>제23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의목적, 일시, 장소, 의안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 10일전에 서면(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본다)으로 하되, 우편이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게재한 신문공고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 5 장 회 의</p> <p>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및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1·11·12></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총회)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제3항 제2호와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2></p> <p>⑤제4항의 기한 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문단의장이 전항의 청구가 있을 때부터 21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11-12></p> <p>제23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의목적, 일시, 장소, 의안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 회의 7일전에 서면으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긴급통지 삭제 2021-11-12></p>	<p>위원회 폐지 추가, 임명을 임면으로 변경</p> <p>임시총회 소집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p> <p>통지기간 단축 (10일→7일)</p> <p>긴급통지 삭제</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4조(총회의 의사) ①총회는 정관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자 포함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동 위임자 중 의장에게 위임한 회원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5·2·28></p> <p>②총회의 의안은 소집시 통지한 의안 외에는 이를 심의할 수 없다. 다만, 회원 20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2·28></p> <p>③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한다.</p>	<p>제24조(총회의 의사) ①총회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u>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정관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위임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u> <개정 2021·11·12></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u>정관 제15조 제4항</u>에 의한다.</p> <p>④의장은 <u>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재난사태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u> <신설 2021·11·12></p>	<p>서면에 의한 의결권 위임 가능</p> <p>온라인 총회 근거 마련</p>
<p>제26조(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대리행사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8> 다만, 표결권에 있어 대리인은 1인만을 대리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개최 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p>	<p>제26조(총회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정회원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u>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임원선임에 관한 의결권은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u> <개정 2021·11·12></p> <p>②임원선임을 위해 <u>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투표 참가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u> <신설 2021·11·12></p> <p>③제1항의 경우 <u>의결권이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원본을 총회 개최 3일전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개정 2021·11·12></p>	<p>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p> <p>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근거 마련</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8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p>제29조(이사회 의사)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8></p> <p>②의장은 긴급을 요할 시에는 서면에 의하여 결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의사결의로 본다.</p> <p>③이사회 의사결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정관 제17조 제2항에 의한다.</p> <p>제30조(이사회 의사결사항) 이사회 의사결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회원의 제명 <개정 2000-2-24> 4. 협회의 입회비, 회비 및 수수료 등 결정에 관한 사항 5.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6. 기채 및 상환 7. 잉여금 처분 8.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 10. 회장유고시 임원선임 <개정 2014-2-27> 11. 임원의 사표수리 12. 상근임원의 임면 동의 13.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동의 <개정 1989-2-22> 14. 지회설치 15. 위원회 설치 및 운영 16. 회장입후보등록금<개정 2015-2-27> 17. 예비비 사용승인 <신설 2005-2-28> 18. 기타 회장이 협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8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21-11-12></u> <p>제29조(이사회 의사) ①이사회는 <u>구성원</u>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2></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이사회 의사결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u>정관 제15조 제4항에</u> 의한다. <개정 2021-11-12></p> <p>제30조(이사회 의사결사항) 이사회 의사결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9. <현행과 같음> <u>10. 회장대행 선임 동의 <개정 2021-11-12></u> <u>11. 임원 해임 동의 <개정 2021-11-12></u> <u>12. 상근부회장 임면(의원면직 제외) 동의 <개정 2021-11-12></u> 13. <현행과 같음> <u>14. 지회설치 및 폐지 <개정 2021-11-12></u> <u>15. 위원회 설치 및 폐지 <개정 2021-11-12></u> 16~18 <현행과 같음> 	<p>자구 수정</p> <p>자구 수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1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 총수 및 출석자 수 3. 의사의 진행경과 4. 의결사항 및 찬부 수 <p>제32조(회장단회의) <신설 2008-2-28> ①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장단회의를 둔다.</p> <p>②회장단회의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되, 사안별로 필요한 인사가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③회장단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p>	<p>제31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2인 이상이 <u>서명날인 한 후, 날인한 의장과 이사 2인에게 공증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u> <개정 2021-11-12></p> <p>1~4 <현행과 같음></p> <p>제32조(회장단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u>회장단회의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장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u> <개정 2021-11-12></p> <p>③ <현행과 같음></p>	<p>서류 제출 불편함 해소 위해 공증행위 권한 위임</p> <p>확대 회장단 구성 근거 마련</p>
<p>제 6 장 회계 및 재정</p>	<p>제 6 장 회계 및 재정</p>	
<p>제34조(경비)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입회비 2. 회비, 특별회비 <개정 2003-2-27> 3. 기부금 <개정 2003-2-27> 4.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5. 수수료 6. 기타 수입 	<p>제34조(경비) 본 협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사업수입 및 수수료 <개정 2021-11-12></p> <p>6. <현행과 같음></p>	<p>수익사업 명문화에 따라 사업수입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37조(결산의 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사업 및 수지결산보고 4. 과부족금 처리안 5. 기타 감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해 산</p> <p>제38조(해산) 본 협회는 다음 중 1의 사유가 발생 시 해산한다. <개정 2005:2:28></p> <p>제40조(잔여재산 및 부채정리) 본 협회의 청산완료후의 잔여재산 또는 부채는 해산총회에서 특별한 의결이 없는 한 해산시의 회원부담금 비율에 의거하여 안분 또는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2:24></p>	<p>제37조(결산의 보고) 회장은 매 회계연도말 현재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재무제표 <개정 2021:11:12> 3~5 <현행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제 7 장 해 산</p> <p>제38조(해산) 본 협회는 다음 중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해산한다. <개정 2005:2:28></p> <p>제40조(잔여재산 및 부채정리) 본 협회의 청산완료후의 잔여재산 또는 부채는 <u>해산총회의 의결 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u> 특별한 의결이 없는 경우 해산시의 회원부담금 비율에 의거하여 안분 또는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1:12></p>	<p>자구 수정</p> <p>주무관청 승인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사 무 국 <본장신설 2012.2.29></p> <p>제41조(직제 및 직원) ①본 협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제 및 직원을 둔다.</p> <p>②직제와 직원의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p> <p>③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2.2.29></p> <p>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2. 파산하여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5. 채용의 경우 협회를 상대로 송사 등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였거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던 자, 징계절차 진행 중에 퇴직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제 8 장 사 무 국 <본장신설 2012.2.29></p> <p>제41조(직제 및 직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본조신설 2012.2.29></p> <p>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4. <현행과 같음></p> <p>5. 협회를 상대로 송사 등 법적 다툼에서 패소하였거나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던 자, 징계절차 진행 중에 퇴직한 자 <개정 2021.11.12></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1.11.12></p> <p>1.(시행일) 2021년 11월 12일 개정은 주무부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자구 수정</p> <p>채용 불가 징계 요건 강화</p>